

공주대학교 종합감사 결과

1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8. 7. 9. ~ 7. 20. [10일간]
- 감사인원 : 12명

2. 감사결과 지적사항

가. 분야별 지적 건수

구 분	인사·복무	산단·연구비	예산·회계	입시·학사	시설	계
지적	11	8	12	13	4	48

나.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

지적건명	지 적 내 용	처 분
【인사·복무】		
1.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수 2명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및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는데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각각 '경고' 및 '내부종결' 처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,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제3호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4명)
2. 계약직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등	<p>【계약직 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】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7. 1.부터 '17. 8.까지 9개 부서에서 총 18건의 계약직 면접심사를 실시하면서, 심사위원의 1/2 이상을 채용부서 외 학내 인사로 未위촉 <p>【계약직 채용 평가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】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6. 2.부터 '16. 12.까지 계약직 입학사정관 채용 시 소속 관서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한 9명의 교직원에게 평가수당 합계 1,600천원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주대학교 계약직 근로자 인사관리 지침 제9조 제5항 및 제6항,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】</p>	<p>【①번 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통보 - 향후 계약직 채용시 관련 지침에 맞게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바람 <p>【②번 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6명) ○ 시정(회수) - 부적정하게 지급된 채용 평가수당 합계 1,600천원을 000 등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3. 근무지 무단이탈 교원 결근 未처리 및 보수 과다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생활체육지도학과 교수 000가 '13.9.5.부터 '14.7.28.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총 223일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결근 未처리 ○ 000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중 개인 연가일수 44일을 초과한 176일에 대한 연봉일액을 감액하지 않아 보수합계 25,893,820원 과다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, 공무원 보수규정 제46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2명)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다 지급된 보수 합계 25,893,820원을 000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4. 전임교원 채용 및 학장공모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	<p>【전임교원 채용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】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학년 1학기부터 '18학년 1학기까지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 867명(연인원)에게 심사수당 합계 62,390,000원 지급 <p>【학장공모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】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6년부터 '18년까지 단과대학 학장 공모를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 38명(연인원)에게 심사수당 합계 1,900,000원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(2015~2017년),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(기재부, 2015~2018년),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】</p>	<p>【①,②번 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8명) ○ 시정(회수) <p>【①번 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하게 지급한 채용심사수당 합계 62,390천원을 000 등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<p>【②번 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하게 지급한 학장공모 심사수당 합계 1,900천원을 교수 000 등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5. 연구년 교수 등 연구실적물 未제출 및 지연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3년부터 '17년까지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교수로 선정된 교수 31명은 연구실적물을 '18. 7월 감사일 현재까지 未제출 하거나, 제출기한보다 56일에서 1,068일 지연 제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주대학교 교수연구년 및 안식년 규정 제2조 및 제6조, 공주대학교 교수 연구년 및 안식년 선발지침, 공주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3조 제4항 및 제22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1명) ○ 주의(29명)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6. 조교 복무 未처리 학위과정 수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교 6명은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 까지 복무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대학원 석.박사 과정 49개 과목 합계 218일(1,746시간) 수강 ○ 조교 4명은 '15년도부터 '17년도까지 未허가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및 결근 시 공제 되어야 할 보수 합계 9,847,350원 수령 <p>【국가공무원법 제58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, 국가공무원 복무.징계 관련 예규 제9장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6명) ○ 시정(회수) - 부적정하게 수령한 연가보상비 및 보수 합계 9,847,350원을 000 등 4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
7. 未승인(복무 未처리) 타교 출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8명은 소속 학장의 사전 출강승인을 받지 않거나 근무상황 처리 없이 타 대학에 출강 <p>【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,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조, 국가공무원 복무.징계관련 예규 제11장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4명) ○ 주의(4명)
8. 진단서 未첨부 병가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년부터 '17년까지 직원 2명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 일수를 연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 보수 총 1,399,160원 과다 수령 <p>【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5항, 제18조 제3항 및 제24조,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2명) ○ 시정(회수) - 과다 수령한 연가 보상비 및 결근 시 공제되어야 할 봉급 액 합계 1,399,16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9. 복무 未처리 공무외 국외여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4. 12.부터 '18. 5.까지 교원 70명이 소속기관장의 허가 및 근무상황 처리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<p>【국가공무원법 제58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, 공주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18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2명) ○ 주의(68명)
10. 성범죄경력 未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년부터 '18. 7월 감사일 현재까지 53명을 시간강사 등으로 채용한 이후 성범죄경력 조회 <p>【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제1항 및 제3항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- 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 후 채용하기 바람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11.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교수 000은 '15. 9. 1. 이미 발표된 제자 석사 학위논문을 출처 표시없이 단순 요약하여 학술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, 공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징계(1명) <p><별도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동아대학교) - 부당하게 논문 저자를 표시한 사례를 통보하니 부교수 000을 학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기 바람
【산단·연구비】		
12. 물품구매 부당 및 허위서류 작성.행사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000는 '15. 8.부터 '18. 5.까지 11개 연구과제에서 매 형이 대표인 000에서 총 28건, 합계 106,719,100원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, 본인이 검수란에 서명하여 지출증빙서류로 제출 ○ 위 000는 '16. 9.부터 '18. 5.까지 4개 연구과제에서 총 6건, 합계 15,643,000원의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000과 공모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출증빙서류로 제출 ○ 위 000는 '17. 10.부터 '18. 5.까지 5개 연구과제에서 총 8건 합계 2,520,000원의 VIPS상품권을 연구비 카드로 구매하고 본인과 참여 연구원들이 회의 후 식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증빙서류로 제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, 계산증명규칙 제8조, 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 제37조 및 제41조, 제42조 및 제50조, 제58조 및 별표1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징계(1명) ○ 시정(회수) - 물품거래명세서 및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교수 000로부터 합계 18,163천원(15,643천원+2,520천원)을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<p><별도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발 ○ 통보(중소기업청, 한국연구재단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지식재산전략원,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,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) - 연구과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사례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13. 산업자문 임의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수 3명이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학협력단에 산업자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산업체와 총 4건 (55,250,000원) 자문계약 체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3명) ○ 시정(회수) - 산업자문 신청을 하지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- 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간접비 9,825천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</p> <p>【국가공무원법 제64조, 공주대학교 연구진흥을 위한 지원 지침 제2조 및 제72조, 제93조】</p>	<p>아니하고 임의로 지문계약을 체결한 000 등 3명의 교수로부터 산업자문료 9,825천원을 납부받아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 바람</p>
<p>14. 부외계좌 운영 부적정</p>	<p>○ 교수 000은 '17. 9월부터 '18.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계좌를 통해 이월금,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등으로 17,747,461원을 입금받고 학생도우미수당, 논문심사수당 등으로 6,546,450원 지출</p> <p>【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】</p>	<p>○ 경고(1명) ○ 시정 - 개인명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액 11,201,011원을 대학 회계로 편입하기 바람</p>
<p>15. 시작품 전산시스템 未등록</p>	<p>○ 교직원 14명은 '15. 1월부터 '18.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총 24건의 시작품을 구입하고도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에 未등록</p> <p>【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 제43조】</p>	<p>○ 주의(14명)</p>
<p>16. 직무발명 개인명의 특허 출원.등록 부적정</p>	<p>○ 교수 4명은 '05. 1월부터 '18.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등록된 6건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</p> <p>【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, 공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및 제11조】</p>	<p>○ 주의(4명) ○ 시정 - 개인 명의로 등록된 6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</p>
<p>17. 계약학과 보직수당 지급 부적정</p>	<p>○ '15. 1월부터 '18. 6월까지 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교수 7명에게 보직수당 합계 100,800천원 지급</p> <p>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, 공주대학교 계약학과 세부운영 지침 제7조 관련 별표 1】</p>	<p>○ 경고(11명) ○ 시정(회수) - 근거 없이 지급한 보직수당 합계 100,800천원을 000 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</p> <p><별도조치></p> <p>○ 통보(교육일자리총괄과) - 계약학과 보직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18.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지급 및 산정 부적정	<p>【연구개발능력성과급 초과 지급 관련 사항】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’15. 3.부터 ’17. 9.까지 연인원 702명에게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상한을 초과하여 ‘연구개발사업 유치장려금’으로 함께 1,709,851천원 추가 지급 <p>【연구개발능력성과급 산정·지급 부적정】 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’18. 5. 연인원 678명에게 과제별 간접비 수입액에 따라 함께 531,856천원을 연구개발능력성과급으로 지급 <p>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‘별표 2’,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적용기준 종합안내(국가과학기술위원회)】</p>	<p>【①번 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과 지급된 연구개발능력성과급 1,709,851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기 바람 <p>【②번 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관경고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기 바람
19. 물품관리 부적정	<p>【재물조사 결과 허위보고에 관한 사항】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21점의 물품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물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물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교육부에 보고 <p>【물품분실에 관한 사항】 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직원 12명은 총 24점 합계 31,800,180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물품관리관 등에게 未보고 <p>【물품 무단반출에 관한 사항】 ③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직원 16명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 없이 태블릿 컴퓨터 등 총 64점의 물품을 무단 반출 사용 <p>【물품관리법 제19조, 제26조, 제30조, 제31조 및 제4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고(20명) 주의(14명)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품의 실제현황과 물품대장이 일치 되도록 물품을 관리하고,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<p><별도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보(운영지원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품관리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【예산·회계】		
20. 업무추진비 자채 이·전용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’16학년도 및 ’17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을 자채 이·전용(3회)하면서 총 18개 사업의 복리후생비 등 타 비목에서 함께 31,332천원을 ‘업무추진비(목)’으로 승인하여 이·전용 <p>【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, 2016~2017), 공주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(2016~2017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고(8명)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21. 이·전용건 등 일상감사 未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6학년도부터 '17학년도까지 총 6차례 대학회계 예산을 이·전용하면서 총 33건, 합계 570,053천원에 대해 일상감사 未 실시 ○ '18. 3. 21. '공주대학교수련원 청소 및 관리용역 연장 계약 (계약금액 49,527천원) 체결 시 일상감사 未 실시 <p>【공주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제4조 제1항, 공주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(2016~2018)】</p>	○ 기관경고
22. 차량유류비 집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. 1월부터 '18.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조달청 '공공기관유류공동구매서비스' 이용을 위한 '공공 조달 유류구매카드'를 발급받지 아니함 ○ '15. 1월부터 '18. 6월까지 총 1,577 차례에 걸쳐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아닌 총 85개 주유소에서 합계 16,602천원을 더 주고 주유 <p>【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, 2015~2018), 공주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(2015~2018)】</p>	○ 경고(10명)
23. 겸임교수 수당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학년도 2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까지 3학점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고 논문지도(공동지도)를 하지 않은 겸임교수 16명(연인원 33명)에게 겸임 교수 수당 합계 24,811,740원 지급 <p>【공주대학교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제28조】</p>	○ 경고(9명)
24. 자기소관 사무 강의료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. 2월부터 '18. 7월까지 자기소관 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4명에게 최소 200천원부터 최대 240천원 까지 강의료 합계 880천원 지급 <p>【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, 2015~2018), 공주대학교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11명) ○ 시정(회수) - 부적정하게 지급된 자기소관 사무 강의료 합계 880천원을 수령자 4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25.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.1월부터 '18. 6월까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한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 85명(연인원 181명)에게 보직수행경비 합계 402,951천원 지급 <p>【국립학교설치령 제15조,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, 2015~2018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통보 - 향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위 영에 위배되는 지침은 개정하기 바람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26. 가족수당 등 수령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직원 17명은 '13. 7월부터 '18. 6월까지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가족수당 16,960천원, 맞춤형복지비 2,350점(2,350천원) 등 합계 19,310천원 과다 수령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7항,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17명)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합계 16,960천원을 000 등 17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맞춤형복지비를 부적정하게 수령한 000 등 12명에 대하여 향후 맞춤형복지비 배정 시 부적정하게 수령한 맞춤형복지비만큼 차감하기 바람
27. 국고(대학회계) 지연 납입 등 수입금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4. 4월부터 '18. 5월까지 총 513건, 수입금 합계 7,660,370,864원을 자체수입으로 수납받고도 짧게는 10일, 길게는 363일 지나 국고(대학회계)에 입금 ○ '18. 3월부터 '18.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수입 계좌로 수납된 수입금 총35건, 합계 247,790,720원을 대학회계에 세입 미처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고금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,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52명)
28. 여비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6. 1월부터 '18. 4월까지 교직원 18명에게 출장비 총 22건, 합계 799,270원 부적정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, 제5조 및 제16조, 공주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(2015~2018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주의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 합계 799,27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
29. 대학명의 계좌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6. 2월부터 '18.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대학명의로 개설한 125개 계좌, 예금합계 4,575,037,632원('18. 7. 9. 기준)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관련 회계 예·결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관리 - 특히 21개 계좌(잔액 합계 1,719,098원)는 휴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관련회계 예·결산 편성 없이 별도 관리 하고 있는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계좌로 방치 【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,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7조 및 제10조,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(교육부, 2015~2018)】	대학명의 125개 계좌, 합계 4,575,037,632원 ('18.7.9.기준)에 대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나 관련회계 편입 등 조치를 취하고 - 대학명의 21개 휴면 계좌는 해지하기 바람
30.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○ '15. 1월부터 '18. 7월까지 업무추진비에서 총 450건, 합계 52,826천원을 직원 축·조의금, 격려금 등으로 사용 【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1호, 공주대학교 예산집행 기본지침(2015~2018)】	○ 주의(4명)
31. 未허가(사용료 未징수) 국유재산 사용	○ 재단법인 공주대학교동창회장학회가 '14. 10.부터 '18. 7.까지 교내 응비학생회관 202호(60㎡), 203호(60㎡)를 국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없이 사무실로 사용 【국유재산법제7조 제1항,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】	○ 주의(13명) ○ 통보 - 총동창회장학회가 「국유재산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<별도조치> ○ 통보(운영지원과) - 국유재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【입시·학사】		
32.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	○ 평생교육원은 '15학년도 2학기, '17학년도 1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까지 178개 교육과정을 개설 하면서 모집공고 이후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- 특히, '15학년도 2학기에 개설한 54개 교육과정은 교육부에 未보고	○ 주의(3명) <별도조치> ○ 통보(평생학습정책과) -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운영위원회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【평생교육법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규정 제6조 및 제12조】</p>	<p>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육부에 보고도 하지 아니한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</p>
<p>33. 평생교육원 임차시설 이용 未보고</p>	<p>○ 평생교육원은 '17학년도 1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까지 3개 임차시설에서 7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부에 未보고</p> <p>【평생교육법시행령 제24조,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철저(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2, 2017. 1 18.)】</p>	<p>○ 경고(3명) <별도조치> ○ 통보 (평생학습정책과) - 임차시설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부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</p>
<p>34.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 의무 未준수</p>	<p>○ 평생교육원은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까지 186개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하면서 표시 의무 未이행</p> <p>【자격기본법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】</p>	<p>○ 주의(3명)</p>
<p>35. 최고경영자 과정(非 학위 과정) 운영 부적정</p>	<p>○ '15학년도 8월부터 '18학년도 2월까지 최고경영자 과정 출석미달자 274명에게 수료증 수여</p> <p>【고등교육법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공주대학교 학칙 제120조,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규정 제14조 및 제18조, 공주대학교 테크노융합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규정 제14조】</p>	<p>○ 경고(20명) <별도조치> ○ 통보(평생학습정책과) - 최고경영자과정 '출석' 미달자 수료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</p>
<p>36. 교직과정 교육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 등</p>	<p>【공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】①</p> <p>○ 사범대학·교육대학원·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게 '교육봉사활동계획서'를 제출받지 아니하고, 봉사활동 인정여부 확인 없이 '교육봉사활동확인서' 제출 만으로 2학점 부여</p> <p>【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】②</p> <p>○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학생 4명이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동료 영양사가 근무하는</p>	<p>【①관련】</p> <p>○ 기관경고</p> <p>【②관련】</p> <p>○ 통보 - 000 등 4명이 교육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부여 받은 학점에 대해 학칙 등 관련 규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(60시간)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교육봉사활동(60시간)을 한 것처럼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고 직인관리자 몰래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공주대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이수학점(2학점)을 부여받고, 석사학위 및 무시험검정으로 영양교사(2급) 자격 취득</p> <p>【학교장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】③</p> <p>○ 00초등학교 등 4개교의 학교장 직인 관리자 4명이 소속 교육공무직 영양사 4명이 허위로 작성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찍을 수 있게 하는 등 직인 관리소홀</p> <p>【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,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, 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(교과부 고시 제2012-27호, 교육부 고시 제2014-43호, 제2014-48호, 제2015-73호, 제2016-104호 제2016-106호, 제2017-126호) 제6조,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(2013~2018),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2조 및 제14조,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9조 및 제11조,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9조 및 제11조】</p>	<p>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</p> <p><별도조치></p> <p>【②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문책 7명) <p>(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)</p> <p>【①,②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교원양성연수과) -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접수하지 않은 채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학점을 부여한 사례 등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<p>【②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발 <p>【③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4명) <p>(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)</p>
37.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 일수 임의 조정 등	<p>○ 교원 12명은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7학년도 2학기까지 수업일수를 임의로 단축 하는 등 계절제 수업 운영 부적정</p> <p>【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81조】</p>	<p>○ 경고(12명)</p>
38. 전임교원 책임교수시간 未준수 및 未보충	<p>【전임교원 책임교수시간 未보충】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수 2명은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7학년도 2학기까지 미달한 강의책임시간을 다음 학기에 未보충 <p>【전임교원 책임교수시간 未준수】 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주대학교는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7학년도 1학기 까지 퇴직 예정 교수 5명에게 매학기 책임교수 	<p>【①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2명) <p>【②관련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주의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시간에 미달되게 강의 배정</p> <p>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,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4조, 공주대학교 수업운영 지침 제15조】</p>	
<p>39.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</p>	<p>○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6명이 일반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학생 13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'B0 ~ D0' 부여</p> <p>- 그중, '17학년도 1학기에 학생 1명은 국가장학금 I, II유형 합계 1,713,000원 수령</p> <p>【공주대학교 학칙」 제83조, 공주대학교 수업운영 지침 제18조의 2의 제1항, 2017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안내, 공주대학교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계획】</p>	<p>○ 경고(6명)</p> <p>○ 통보</p> <p>- 학생 13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'F'학점으로 처리하기 바람</p> <p><별도조치></p> <p>○ 통보(한국장학재단)</p> <p>- 기준 미달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</p>
<p>40. 현장실습 현장지도未 실시</p>	<p>○ 교원 45명이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7학년도 2학기까지 현장실습생 330명(207개 산업체)에 대하여 현장 지도未 실시</p> <p>【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3, 공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침 제10조】</p>	<p>○ 기관경고</p> <p>○ 통보</p> <p>- 현장실습 담당 지도교수가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실습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</p>
<p>41. 현장실습계약 체결 기한未 준수</p>	<p>○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7학년도 2학기까지 재학생 86명이 56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함에 있어 현장실습 시작일 7일 전까지 현장실습 계약未 체결</p> <p>【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】</p>	<p>○ 기관주의</p>
<p>42. 수업 결손 및 복무 위반 등 부당</p>	<p>○ 국제학부 교수 1명은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7학년도 2학기까지 외부강의를 하면서 총장未승인 및 복무未처리</p> <p>○ '15.1.4.부터 '18.5.14.까지 총 8회, 451일에 걸쳐 국제학부장의 승인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</p> <p>○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까지 공무외</p>	<p>○ 경징계(1명)</p> <p>○ 경고(1명)</p> 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강의료 합계 4,140천원을 부교수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	<p>국외여행으로 결손된 23개 과목 138시간에 대한 보강 未 실시</p> <p>-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8학년도 1학기까지 未보강 138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로 합계 4,140천원 수령</p> <p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제58조 및 제64조, 공주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7조,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3조,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,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조, 공주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 제3조】</p>	<p>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</p>
43. 출석부 未보관	<p>○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7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19명이 105개 교과목 출석부 未보관</p> <p>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4조,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1, 2015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(행정자치부)】</p>	<p>○ 경징계(1명)</p> <p>○ 경고(18명)</p> <p>○ 통보</p> <p>- 출석부 등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수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</p>
44. 성적 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	<p>○ '15학년도 1학기부터 '16학년도 2학기까지 직전학기 성적이 장학금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5명에게 성적 우수 장학금 합계 1,907천원 지급</p> <p>【공주대학교 학칙 제114조, 공주대학교 장학 규정 제8조, 공주대학교 장학금 지급 지침】</p>	<p>○ 경고(6명)</p>
【시설】		
45. '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 관련 부당 지시 등	<p>○ 대학본부 신축공사시 조달청 보완지시 등으로 '대학본부 관급자재(무대장치)' 계약이 지연되던 중 계약상대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직원 1명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(주)000에 3,700천원 상당의 무대장치를 설치하게 함</p> <p>- 위 직원 1명은 계약상대자가 (주)000으로 최종선정되자 既 설치된 3,700천원 상당의 무대장치 비용을 두 업체간 정산 처리하도록 부탁</p> <p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, 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2항】</p>	<p>○ 경징계(2명)</p> 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(주)000이 실제 구입 및 설치하지 아니한 3,700천원 상당을 위 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
46.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. 1월부터 '17. 10월까지 4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합계 17,932천원 상당 공사비 과다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3명)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과대학 학생생활관 분관 용주학사 리모델링 공사를 부실하게 감리한 (주)00과 건축감리원 000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 시공 4건 공사비 과다지급액 합계 17,932천원을 시공업체 (3개)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47.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. 8월부터 '17. 12월까지 3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사용불가 항목 등으로 집행한 환경보전비 합계 1,395천원 未감액 ○ '15. 5월부터 '17. 11월까지 6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사용불가 항목 등으로 집행한 안전관리비 합계 7,511천원 未감액 ○ '15. 10월부터 '17. 8월까지 2건의 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이 없는데도 1,068천원 未감액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,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,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,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94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10명)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액정산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1,395천원과 안전관리비 7,511천원 및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장기요양보험료 등 소계 1,068천원 합계 9,974천원을 시공업체(10개)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48. 국유재산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5. 12월부터 '17. 12월까지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하면서 국유재산 건물 5동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소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유재산법 제66조,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,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5명) <별도조치> ○ 통보(운영지원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유재산 관리 소홀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